

서울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나20470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최희원

피고, 항소인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광수, 여동현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1. 2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0가합53707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V 대 19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3. 12. 19. 접수 제69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 4항의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C, D, E”을 “제1심 공동피고 C, D, E”으로 각 고친다(이하 같다).

○ 제1심 판결 제13면 제12행의 “않다.”와 “이런 사정”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제1심 공동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중에 2020. 5. 12.자 변호인 의견서에서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증인 신청을 하였다가, 증인신문을 마친 후 범행을 자백하였다.1)』

○ 제1심 판결 제16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한 달”을 “일 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9면 첫행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첫행의 “가)”를 “나)”로, 제9행의 “나)”를 “다)”로, 제20면 제3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친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B은, 망인의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의사능력 내지 지능이 상당히 미약했던 상태에서, 망인의 도장을 평소에도 관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망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의 경위와 그 무렵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받아 관리, 사용하는 등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 제1심 판결 제19면 제5행의 “이에”부터 제8행의 “어렵다.”까지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조회(을마 제17호증,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국공채계좌’라고 한다)에는 2013. 11. 14. 1억 1,500만 원이 망인의 국공채계좌로 입금예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역의 조회기간은 2013. 11. 14. 하루뿐이므로 그 이후의 거래내역을 알 수 없는 점{제1심 공동피고 B이 반포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개시시 위 국공채계좌의 잔고는 5,721원이므로, 2013. 11. 14.부터 상속개시시(2019. 7. 30.)까지 거래내역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알 수 없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B 본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출금하여, 국공채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의 망인의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국공채계좌의 관리, 사용에 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국공채계좌에 입금예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조영철, 판사 황병하

1) 제1심 공동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 중 2020. 6. 19.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제1심 공동피고 B)이 망 J(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망 J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을 인정함을 밝힌다. …(중략)… 다만 망 J의 평소 언행, 사망 직전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J에게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망 J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동의해 주었을 것이다. 즉 피고인은 망 J의 의사를 추정하여, 망 J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 제출의 2023. 1. 13.자 참고자료 2), 위 진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망인의 건강상태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경위는 뒤에서 살피는 망인의 건강상태(‘의사능력 내지 지능이 상당히 미약’)에 더 부합한다(이와 반대되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